주거동

(1) 공용출입구 49
(2) 공용홀 및 복도 54

(1) 공용출입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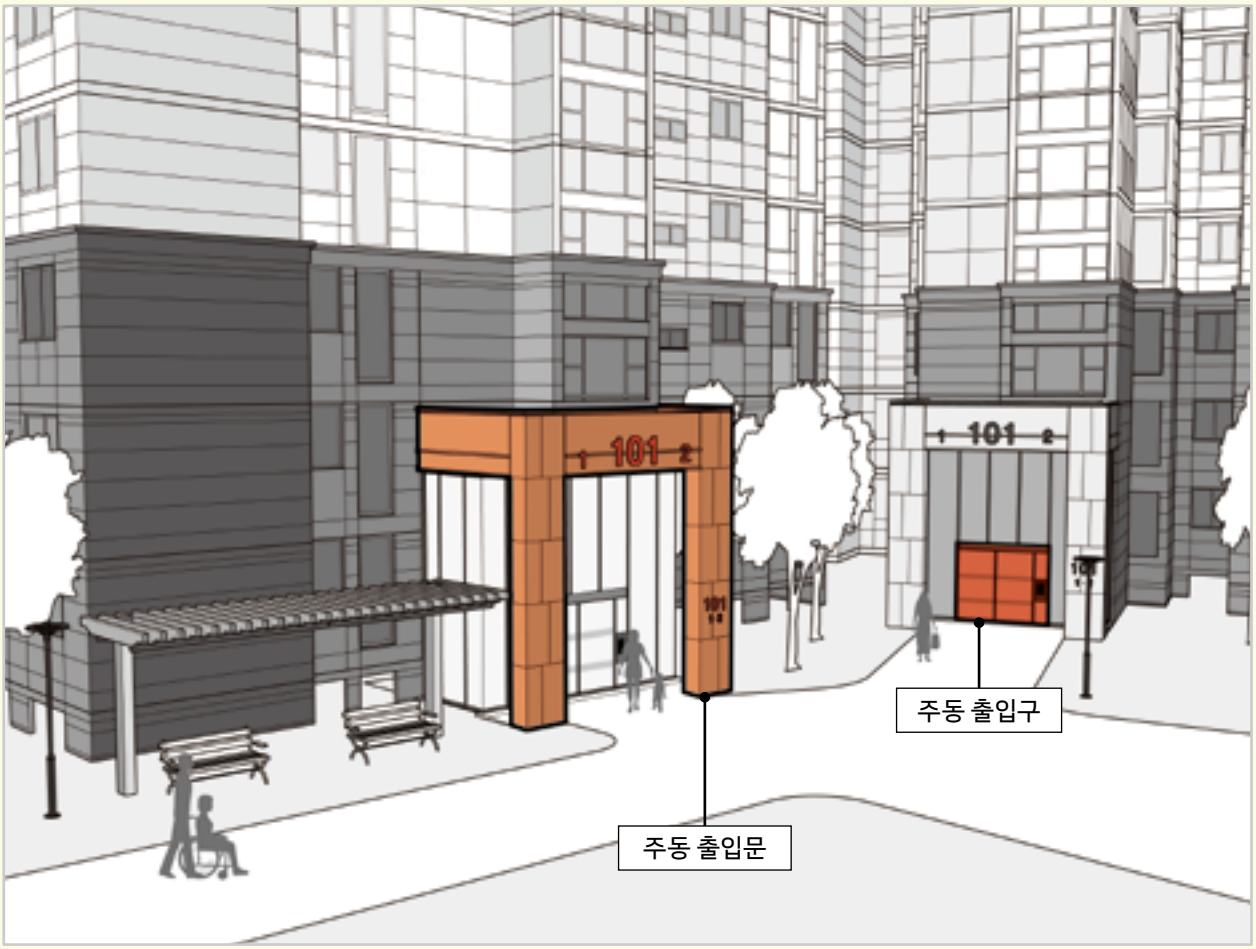

계획원칙

- 주동 출입구는 주 보행로에서 누구나 쉽게 출입구임을 인지할 수 있으며, 공용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1 주동 출입구

기본지침

- **주동 출입구는 단지 내 보행공간에서 휠체어 사용자, 저시력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 및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 특히,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무단차 수평접근이 가능한 구조를 우선 고려한다.**
- **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주동 현관통제기 등은 누구나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**

출입구의 구조 및 활동공간

- 주동 출입구는 접근로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.
  - 시인성 높은 출입구 사인, 색상과 질감이 다른 바닥 재질과 벽면 색채 계획 등
-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별 2개 이상의 출입구 조성을 권장한다.
- 출입구 전면, 주동현관통제기 전면은 비를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.
  - 건축물 돌출 차양 및 캐노피 길이 1m 이상, 너비 1.5m 이상
  - 길이 1.5m 이상 확보 권장(주동 로비공간, 필로티 하부 공간 등을 활용)
- 모든 출입구 전후면에는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바닥 재질은 미끄럼방지 성능을 확보한다.
  - 활동공간: 1.5m × 1.5m 이상(문 개폐 소요공간 제외)
  - 석재 잔다듬 이상 성능 확보
- 출입구 인지 및 활동을 위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되 주변에 빛 공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.
  - 100lx 이상 조도 확보
- 출입문 인근에 노인, 어린이 등이 쉴 수 있는 간이 의자 및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.

■ 그 외 출입구(문)에 관한 규정은 '공공건축물-접근 공간-주출입구(문)'을 참고한다.

필로티형 출입구

- 단차 없는 출입구 조성을 위해 필로티형 구조를 우선 고려한다. 이때 필로티 하부와 주동 출입구는 단차없이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, 우천 시 배수를 위한 배수 구배를 적용하고, 배수 설비를 설치한다.
  - 필로티 하부 보행공간: 종/횡 경사도 1/50 이하로 단차 없이 평탄한 마감 적용
  - 필로티 하부 벽면 선홈통 등은 보행공간 외에 설치 권장하며, 배수덮개 연결 시 덮개에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
  - 트렌치, 배수 덮개 등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틈새 간격 1cm 이하 설치 권장

계단+경사로형 출입구

- 지형적인 이유 등 불가피하게 출입구 높이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단 및 경사로 등의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한다.
  -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
  - 유효폭: 1.2m 이상(성인 2인의 교행을 위한 충분한 폭)
  - 휴식참: 1.5m 이상
  - 계단 디딤판은 0.28m 이상, 챌면 높이 0.18m 이하
  - 경사로 기울기: 1/18 이하(횡단구배 1/50 이하)
  - 전·후면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여유로운 회전을 위해 1.5 × 1.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
  - 손잡이: 손잡이는 잡기 쉽고 차갑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되, 외기에 의한 변형이 최소화되는 재질로 설치 권장

■ 그 외 계단과 경사로에 관한 세부사항은 '공공건축물-내부이동공간-수직이동공간'을 참고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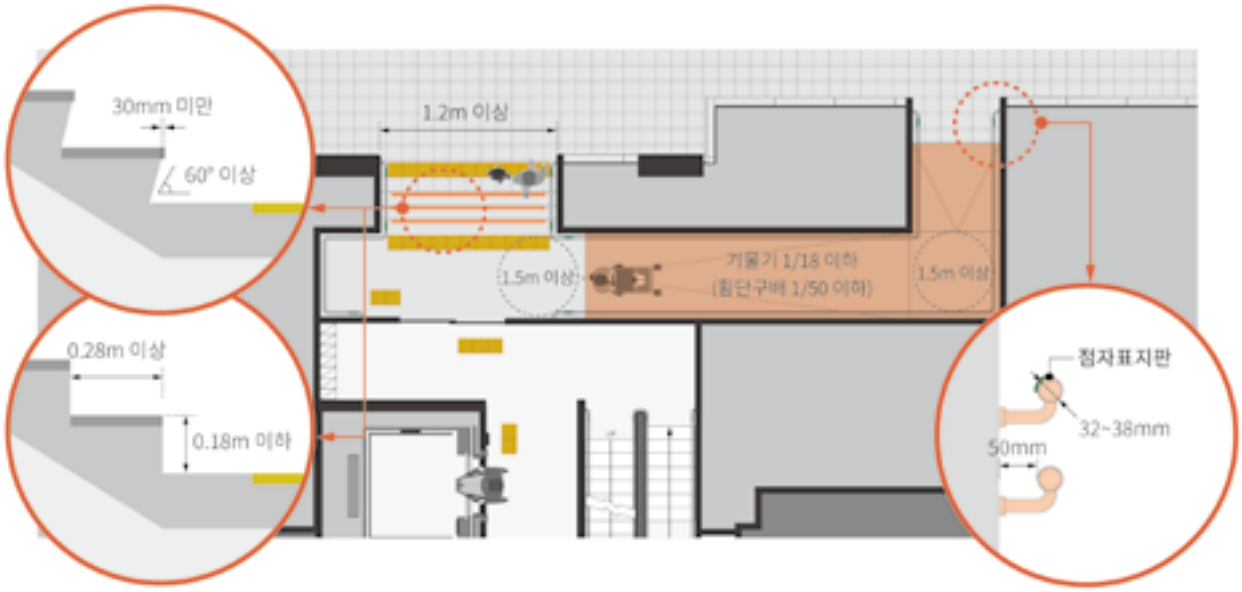

2 주동 출입문

기본지침

- **주동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및 통과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 자동문과 주동현관통제기 등의 시설은 비상 상황을 포함하여 휠체어 사용자, 저시력자, 디지털 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및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**

출입구(문)

- 이삿짐, 쌍둥이 유아차,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을 위한 충분한 통과 유효폭을 확보한다.
  - 휠체어 통과를 위한 최소 유효폭 0.9m 이상 확보
  - 유아차, 전동휠체어 등의 원활한 통과 유효폭 1.1m 이상 확보 권장
- 누구나 편안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1개소 이상은 자동문으로 설치하며, 자동문만 설치 시에는 비상 상황에 수동개폐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.
- 여닫이나 미닫이문의 경우 손끼임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, 자동문의 경우 되열림 기능이 작동되는 안전센서를 설치한다.
  - 안전센서 감지 범위: 바닥에서 높이 0.5~0.7m 내외

■ 그 외 출입구(문)에 관한 규정은 '공공건축물-접근 공간-주출입구(문)'을 참고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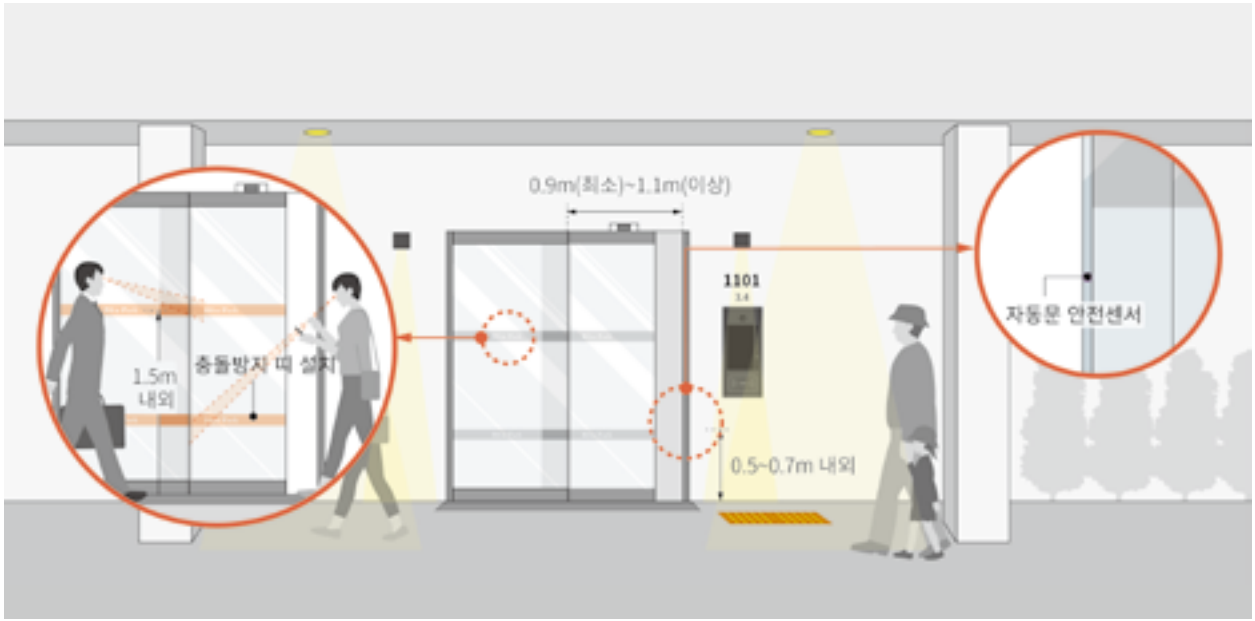

주동 현관통제기 등

- 주동 현관통제기는 비상 상황에 경비실,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통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한다.
- 휠체어 사용자, 어린이, 노인 등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하며,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서리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다.
  - 권장 설치 높이: 바닥에서 기기 중심까지 1.2m 높이
  - 권장 모서리 이격거리: 0.4m 이상
-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넓은 화각을 가진 카메라가 내장된 제품 설치를 권장한다.
  - 권장 화각 범위: 하단 1.2m 이하, 상단 1.8m 이상
- 조작버튼은 색약자, 약시자, 시각장애인 등도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를 고려한다.
  - 점자병기, 음성안내, 양각 버튼형, 카드키 터치 위치와 경비실 호출 버튼 등 색상 강조 및 점자표기 권장
  - 비콘/블루투스를 활용한 전자식 출입시스템 적용 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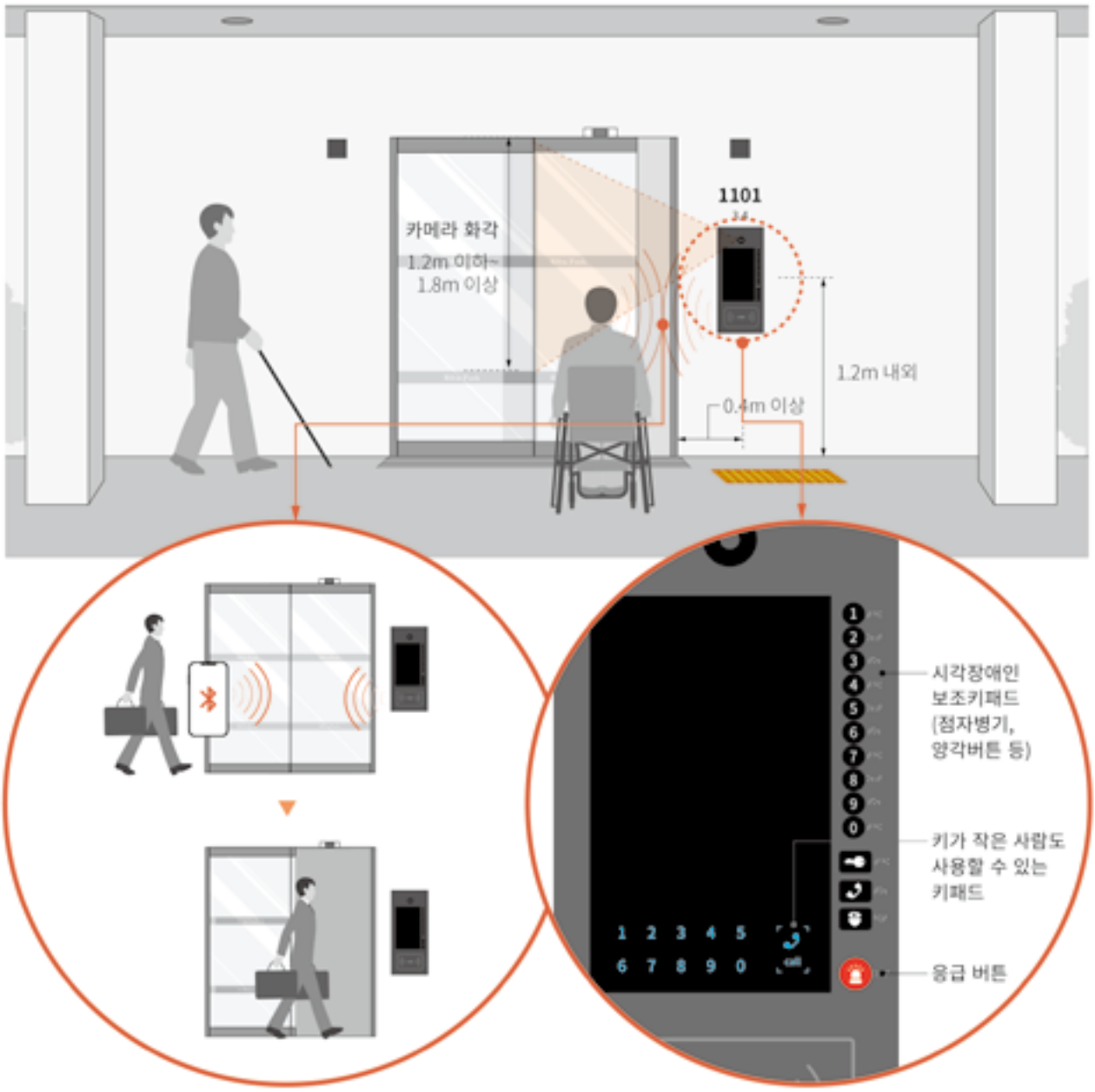

(2) 공용홀 및 복도

계획원칙

- 주동 진입층의 공용홀과 층별 복도는 출입문 통과 후 수직이동시설과 세대별 현관 입구까지 휠체어 사용자, 저시력자를 포함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과 쉬운 길찾기와 신속한 피난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 공용홀과 로비 등은 주거동 내외부의 매개 공간으로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누구나 잠시 머무름과 입주민의 교류 활동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되, 설치되는 공간과 시설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1 로비, 복도

기본지침

- **공용홀과 복도는 휠체어 사용자, 저시력자,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등 입주민 누구나 주야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및 이용 가능하고, 쉬운 길 찾기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, 위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.**
- **공용홀과 복도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등 누구나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마감재, 조명과 색상 등을 활용하고, 시각적 개방감을 느끼도록 계획한다.**

로비 공간 구성

- 주동 출입구 통과 후 승강기(또는 계단실)까지의 시야를 확보하며, 안전 등을 위해 사공간 및 꺾임을 최소화 하여 계획할 수 있다.
- 로비층에는 커뮤니티 활성화, 휴식을 위한 교류공간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.
- 로비 내 주야간 안전한 이동과 방향 안내표지의 인지성 확보를 위한 조도를 확보한다.
  - 100lx 이상 조도 확보
- 출입구 위치, 세대 호수 라인, 수직이동시설 위치 등은 누구나 쉽게 인지 및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.

■ 그 외 로비는 '공공건축물-내부이동공간-로비와 홀'을 참고한다.

우편함, 무인택배함, 계절창고

- 우편함 등은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되, 누구나 쉽게 접근, 사용 및 인지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.
  - 설치 위치: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또는 벽부 매립형 등
  - 보관공간 높이: 바닥에서 0.6~1.2m 내외 위치
- 우편함 등의 전면은 보관공간 이용 및 방향 전환을 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.
  - 전면 활동공간: 1.5m × 1.5m 이상
- 단위세대의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과 택배 이용 편의를 고려한 별도의 수납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  - 필로티 하부 등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되, 다양한 택배 형태를 고려하여 보관공간의 크기를 달리하는 제품으로 설치
  - 세대 별도 수납공간 확보를 위해 계절 창고, 한칸더 수납장 등 설치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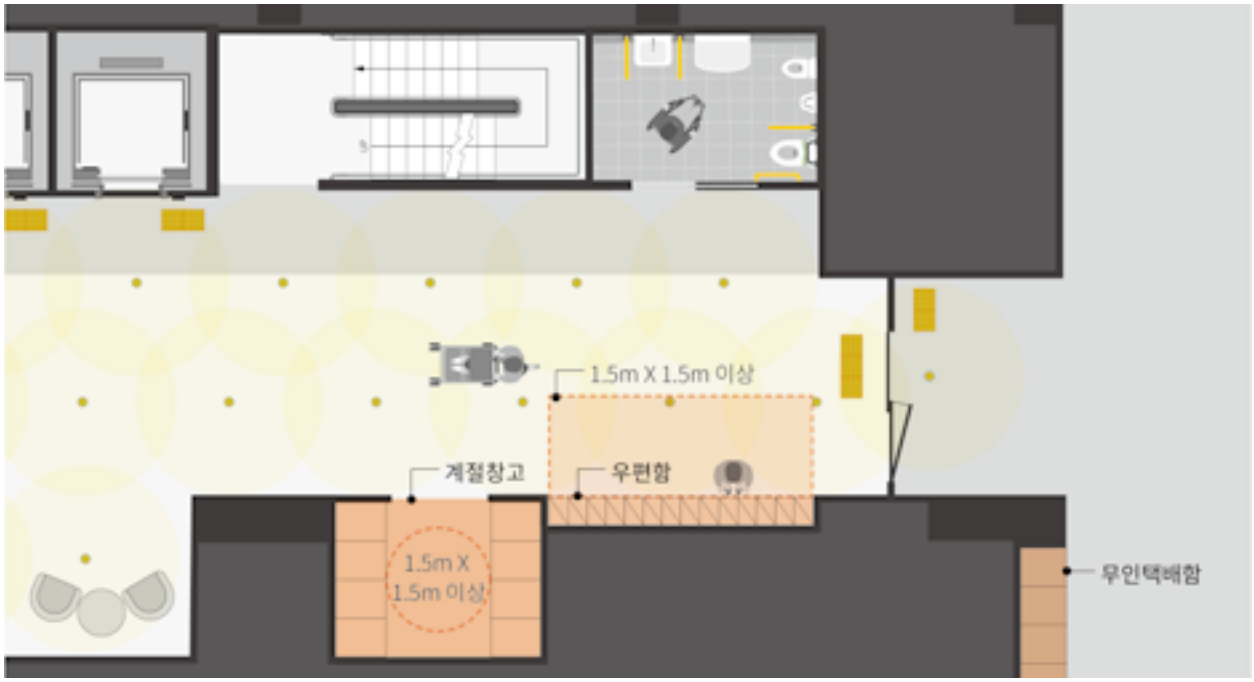

우편함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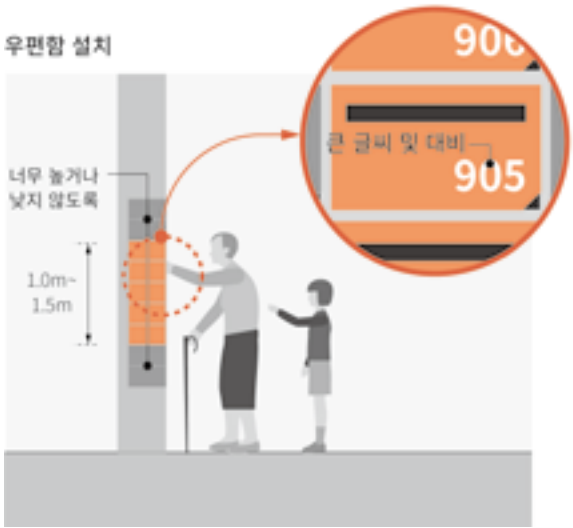

무인택배함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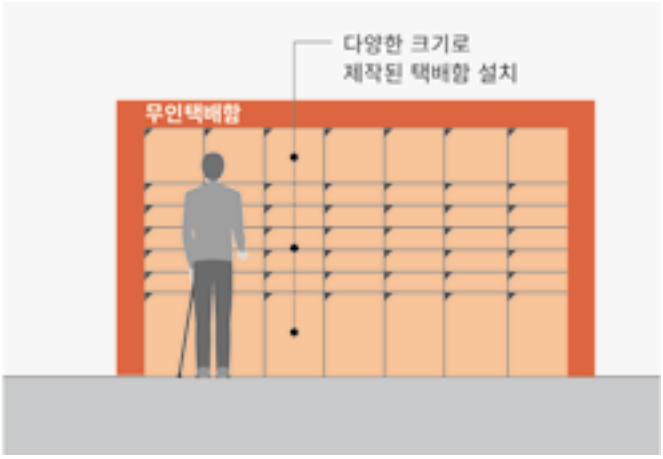

복도

- 복도의 구조는 알코브 형태로 계획하여 세대 출입문과 복도와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, 모서리 둥글게 처리 등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다.
  - 세대 출입구 전면 알코브, 복도 진입부 모서리 등은 둥글게 마감 처리하거나 0.3m 이상의 사면 처리를 통해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충돌 시 충격이 완화되도록 설치 권장
- 복도 통로는 휠체어 사용자의 교행이 가능한 유효폭을 확보한다.
  - 유효폭 1.5m 이상 확보(휠체어 이용자와 비장애인 교행 가능)
  - 유효폭 1.8m 이상 확보 권장(휠체어 2대 교행 가능)
- 감각자극에 예민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, 약시자의 공간인지 등을 고려하여 벽과 바닥은 명도 차이가 나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마감하고, 복잡한 패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.
  - 색상: 안전색채(빨강, 초록, 노랑 등)를 제외한 중명도 계열의 색상을 배색
  - 안내 및 유도 등의 배색기준: 명도 차이 3 이상 권장
-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피경로 확인과 소화 관련 설비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.
  - 소화전, AED, 피난 경로 등은 안전색채, 표준픽토그램 등을 적용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설치
  - 안전색상: 소화관련(빨강 계열), 응급시설 및 대피 관련(초록 계열)
- 복도에는 세대 호수 방향 등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한다.
- 주야간 안전한 이동과 안내시설 이용 및 쉬운 길 찾기를 위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.
  - 조도: 100lx 이상 권장
  - 에너지 절감, 범죄예방 등을 위한 동작감지 자동조명 설치 권장
-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층 또는 동은 보행 보조를 위한 핸드레일, 벤치 등을 설치하며, 비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층 또는 동에도 설치를 고려한다.
- 복도에 설치하는 창문은 휠체어 사용자, 노인 등이 개폐할 수 있도록 낮게 설치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손잡이 제품 등을 설치한다.

■ 그 외 복도는 '공공건축물-내부이동공간-수평이동공간'의 복도 기준을 참고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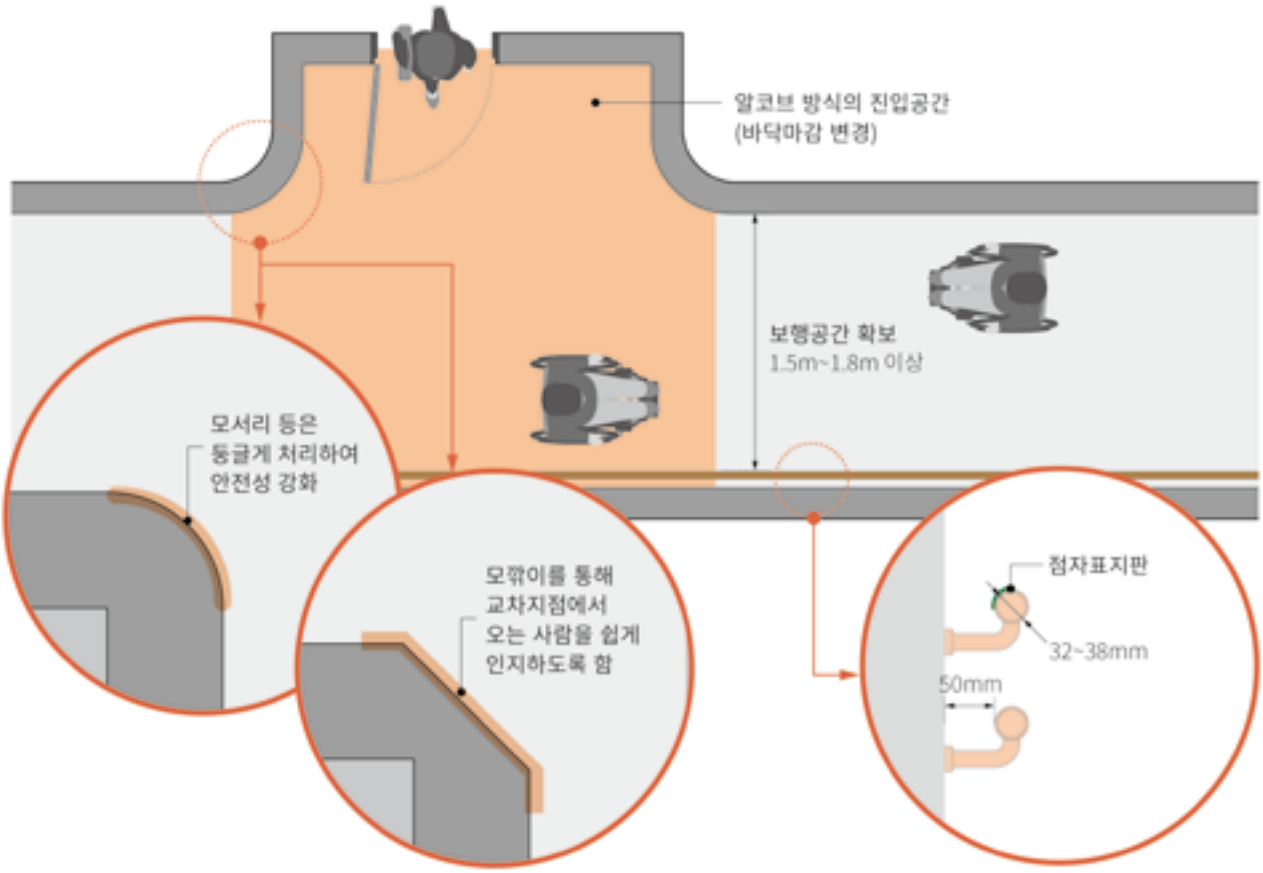
알코브 방식의 진입공간
(바닥마감 변경)
보행공간 확보
1.5m~1.8m 이상
모서리 등은
둥글게 처리하여
안전성 강화
모깎이를 통해
교차지점에서
오는 사람을 쉽게
인지하도록 함
점자표지판
32~38mm
50mm

충분한
조도 확보
사용하기 편리한
손잡이 설치
색상 및
픽토그램을
활용하여
시인성 높은
안내사인 설치
AED
0.4~1.2m
누구나
사용가능한
높이로 구성
창문 및 손잡이를
낮게 배치하여
접근 및
사용성을 높임
701
702
세대 호수
방향의
인지를
돕는
안내시설
(바닥, 벽)
9
바닥과 벽은
명도차이가
나는
색상으로
구분

2 수직이동시설

기본지침

- **주거동의 수직이동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수직이동과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 경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.**

- 휠체어, 유아차, 보행보조기 등의 원활한 대기와 회전을 위한 충분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한다.
  - 휠체어 회전을 위한 최소 활동공간: 1.4m × 1.4m 이상
  - 휠체어 회전을 위한 원활한 활동공간: 1.5m × 1.5m 이상 권장
- 승강기는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이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겸용 승강기 법적 기준 이상의 충분한 규모를 가진 승강기를 설치한다.
  - 12인승 이상(15인승 이상 권장)
- 승강기 내외부 조작설비는 색약자, 약시자 등을 고려하여 크기, 색상, 형태 등을 활용한 시인성을 확보한다.
  - 지상층, 비상통화장치와 층수 버튼의 시인성 확보(글자 크기, 색상, 그림문자, 도형 등을 활용)
- 건강증진을 고려 1~3층까지 계단 이용 유도 디자인 적용을 권장한다.
- 계단실은 색상, 문자 등을 활용하여 층별 인지성을 확보한다.

▣ 수직이동은 '공공건축물-내부이동공간-수직이동공간'을 참고한다.

▣ 수직이동시설에서의 피난 및 대피에 관한 규정은 '공공건축물-피난 및 대피-피난 및 대피 시설'을 참고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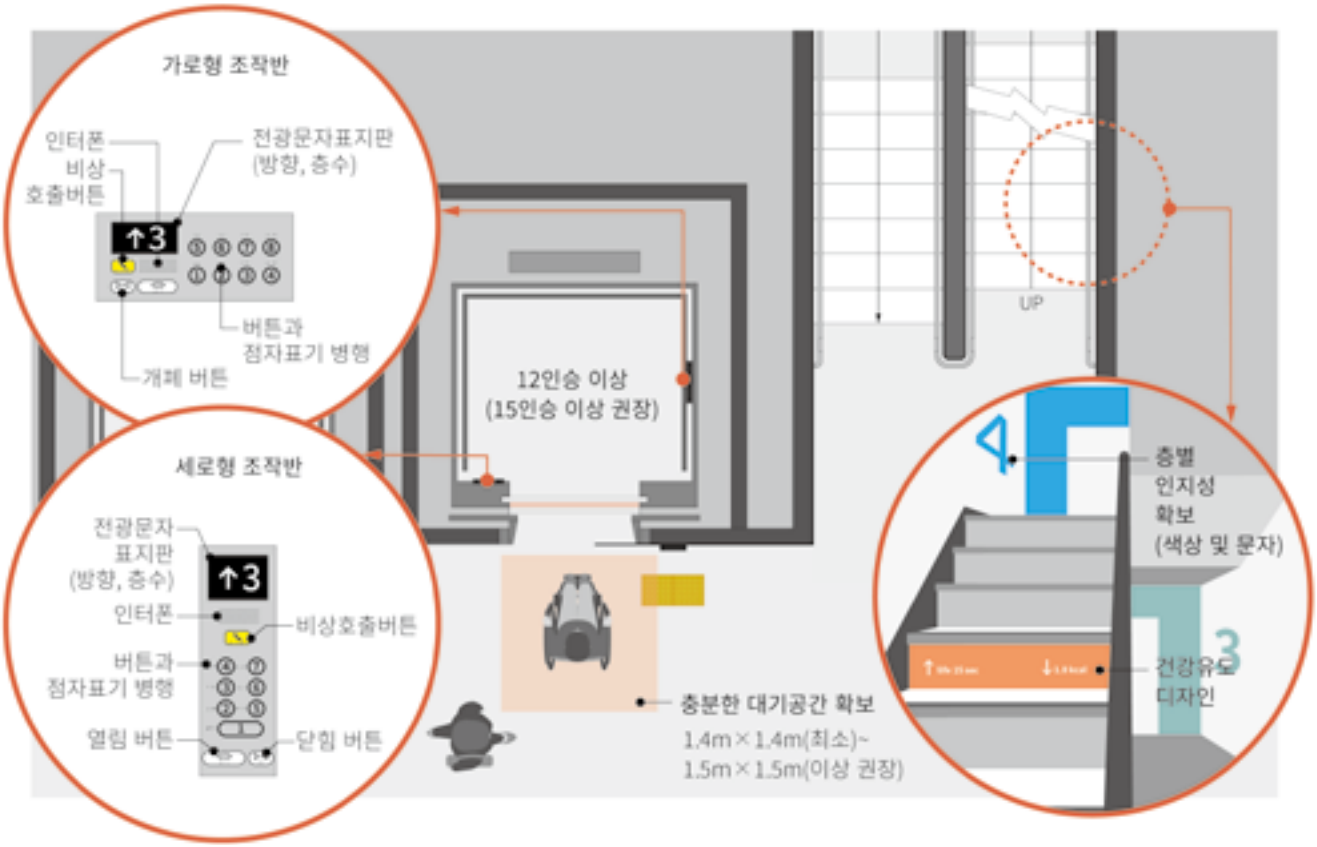

3 공용화장실 등 위생시설 설치

기본지침

- **주거동 진입층 등에는 반려견 동반 외출자, 외부활동 중 위생공간 이용이 필요한 입주민 등을 고려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생공간 설치를 고려한다.**

- 옥외공간과 연결되는 층에 공용화장실 및 클린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.
- 공용화장실은 다목적화장실로 설치하여, 휠체어 사용자, 노인, 영유아 동반자 등이 사용가능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.

◙ 다목적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'공공건축물-위생공간-모두를 위한 화장실'을 참고한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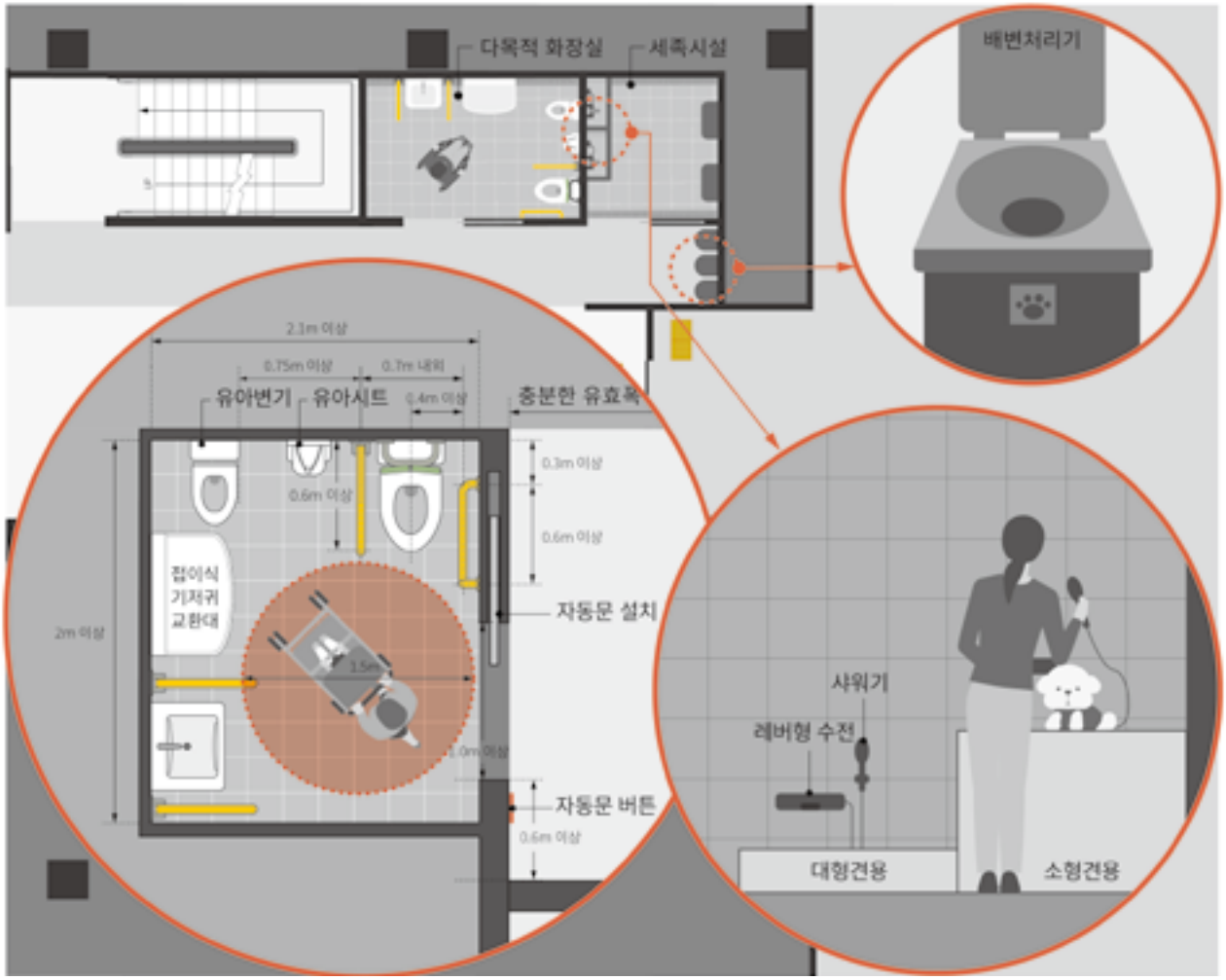
- 반려동물 산책 후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  - 편의시설 : 반려동물 세족시설, 배변처리기 등